

1. 개정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정의 관련 조문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현행화

* '제196조 제1호'를 '제197조 제1호'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1. ~ 4.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	제3조의2(사법경찰관) -----			
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	-----			
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			
말한다.	-----			
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			
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